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○○○○○○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는 한편,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영상조정제도를 도입하고, 출석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기술적·정책적 상담
- 2의2.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

제22조제5항 중 “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”을 “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“당사자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22조제7항 중 “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”을 “당사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 및 당사자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당사자등은 같은 회

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 및 당사자등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24조 중 “간사 1명”을 “간사 1명 및 서기 1명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

가.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의 접수 및  
신청 내용의 확인

나.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의 지원

다. 지식재산 경영인증서(특허청장 명의로 된 지식재산 경영인증서를 말한다)의 발급 및 재발급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의9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)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의9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| ③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<u>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·정책적 상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「 <u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<u>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기술적·정책적 상담</u> |
| 2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<br><u>2의2.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</u>          |
|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2조(조정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2조(조정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<u>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</u>             | ⑤-----<br>--- <u>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“당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·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〈단서 신설〉

⑥ (생략)

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,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## <신 설>

## <신 설>

자등”이라 한다)-----

----- . 다만,  
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 
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----- 당  
사자등-----

⑧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 및 당사자등이 동영상과 음성 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당사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원격  
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 
하는 경우 위원 및 당사자들의  
신상정보, 회의 내용·결과 등  
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

⑧ (생략)

제24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.

제29조(업무의 위탁)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⑩ (현행 제8항과 같음)

제24조(위원회의 간사) -----  
-----  
-- 간사 1명 및 서기 1명-----  
-----  
-----.

제29조(업무의 위탁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

가.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

나.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의 지원

다. 지식재산 경영인증서(특허청장 명의로 된 지식재산 경영인증서를 말한다)의 발급 및 재발급

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|---------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 | (042) 481 - 5920 |